의안번호	제 624 호		
의 결	년 월 일		
연 월 일	(제 회)		

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1년 1월 1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 ·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624 제출연월일: 2021년 1월 11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수목원 관람객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< 입장료 유료 징수를 위한 조항 및 내용 신설 >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반영(안 제2조)
- 기존 제6조(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무료) 조항 삭제
- 수목원 입장권 매표시간에 대한 문구 반영(안 제6조)
- 수목원 시설사용료에 대한 조항 분리 반영(안 제7조)
- 수목원 입장료 및 재료비 징수가능 대상 명시(안 제8조)
-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에 대한 내용, 세부대상자 명시(안 제9조)
- 입장 요금표 게시에 대한 내용 반영(안 제10조)
- 3. 의안전문 : 붙임
-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- **5. 관계법령 발췌** : 붙 임
- 6. 비용추계서 : 붙 임

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 ·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를 삭제하고,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며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어린이"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.
- 2. "청소년"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
- 3. "군인"이란 신분증(휴가증을 포함한다)을 지니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(의무경찰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4. "어른"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.
- 5. "단체"란 유료입장객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.
- 제6조(종전의 제5조) 제2항 중 "입장시간"을 "입장권 매표 및 입장시간"으로 한다.

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,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(시설사용료) 수목원 내 산림교육센터의 사용료는 따로 조례로 정하며,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.
- 제8조(입장료 등) ①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② 수목원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- 제9조(입장료 면제 및 할인) ①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.
 - 1. 국빈과 그 수행자
 - 2.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
 - 3. 만 6세 이하인 사람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
 - 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 - 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- 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- 7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그 동행 1명
 - 8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9. 학술활동,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
- 10. 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워 및 숲사랑지도위워
- 11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12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13.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
- 14. 도지사가 주최 ·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15. 수목원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16. 도민대상수상자 및 명예도민
- 17. 수목원 입장일 현재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에 따라 수목원 소재지 (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을 말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- 18.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.
- 1.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: 단체입장료에 준함
- 2. 연구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각종 기관 또는 단체: 단체 입장료에 준함

3.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(확인서 등을 말한다)을 지닌 개인 및 단체가 다음날까지 입장할 때: 개인의 경우 단체입장료에 준하고 단체의 경우 단체입장료에서 1천원 추가 할인 제10조(요금표 등의 게시) 입장 요금표 등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<현행과 같음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목원 •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.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시설물 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. 제2조 <신설>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어린이"<u>란 만 7세 이상 만</u>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 을 말한다 2. "청소년"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 고등학생을 말한다. 3. "군인"이란 신분증(휴가증을 포함한다)을 지니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(의무경 찰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4. "어른"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. <u>5. "단체"란 유료입장객이</u> 30 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 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. 제2조(위치) 충청북도 미동산수목 제3조(위치) 원(이하 "수목원"이라 한다)은 <현행과 같음>

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일원에 둔다.
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 제4조(도지사의 책무) 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<현행과 같음> 산림청장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미 동산수목원의 진흥실시계획을 5 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다.
- ② 도지사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 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산림과학 박물관, 목재문화체험장, 미동산 생태관, 방문자센터, 난대식물원, 온실 등(이하 "시설물"이라 한 다)의 각종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다.
- ③ 도지사는 수목원내 수목유전자 워의 수집·증식·보존·복원·관리 와 전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- 제4조(개원과 휴원) ① 수목원은 | 제5조(개원과 휴원)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 고 매일 개원하여 개방지역내의 식물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공개 한다. 다만, 도지사는 휴원일 중 특별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개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8.01>
- 1. 1월 1일
- 2. 설날

<현행과 같음>

- 3. 추석
- 4. 매주 월요일(단. 월요일이 공휴 일.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)
- 5. 그 밖에 도지사가 휴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짜
- ② 수목원 시설의 공사, 재해피해 복구. 전시관의 보수 등으로 개 워하는 것이 부적합 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나 전체를 공개하 지 않을 수 있으며, 관람 기간 의 제한과 그 대상 시설물은 산 림화경연구소장(이하 "연구소 장"이라 한다)이 정한다.
- 제5조(관람과 입장시간) ① 수목 제6조(관람과 입장시간) ① 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하절기(3월 ~ 10월): 09:00부터 18:00까지
- 2. 동절기(11월 ~ 다음 해 2월) : 09:00부터 17:00까지
- 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 까지로 한다.
- ③ 도지사는 수목원의 관리·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람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제6조(입장료와 시설사용료) 수목 | 제7조(시설사용료) 수목원 내 산 원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무 료로 한다.

<현행과 같음>

- ② 수목원의 입장시간은 오전 09 ② ---- 입장권 매표 및 입장시간은 -----
 - ③ <현행과 같음>

림교육센터의 사용료는 따로 조 례로 정하며, 그 밖의 시설의 사 용료는 무료로 한다.

제8조 <신설>

제9조 <신설>

- 제8조(입장료 등) ① 수목원에 입 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.
 - ② 수목원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징수 할 수 있다.
- 제9조(입장료 면제 및 할인) ①
 「수목원・정원의 조성 및 진흥
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1조
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
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.
 - 1. 국빈과 그 수행자
 - 2.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
 - 3. 만 6세 이하인 사람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
 - 4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 - 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 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 족 또는 가족
 - 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7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동행 1명

- 8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9. 학술활동,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. 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과 숲사 랑지도위원
- 11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 록된 5・18민주유공자, 그 유 족 또는 가족
- 12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 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13.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「아동복 지법」에 따른 아동
- 14. 도지사가 주최·주관하는 행 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15. 수목원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<u>16. 도민대상수상자 및 명예도</u> 민
- 17. 수목원 입장일 현재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에 따라 수목원 소재지(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을 말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사람

제10조 <신설>

- 제7조(입장과 관람의 금지) 연구 제11조(입장과 관람의 금지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과 관람을 금지한다.<개정 2016.08.01>
- 1.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

- 18.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 한다.
- 1.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: 단체입장 료에 준함
- 2. 연구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협 약을 체결한 각종 기관 또는 단 체: 단체입장료에 준함
- 3.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 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(확 인서 등을 말한다)을 지닌 개인 및 단체가 다음날까지 입장할 때: 개인의 경우 단체입장료에 준하고 단체의 경우 단체입장료 에서 1천원 추가 할인

제10조(요금표 등의 게시) 입장 요금표 등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<현행과 같음>

- 2. 술에 취한 자. 소란행위 등 미 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줄 우려 가 있는 자
- 3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
- 4.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자
- 5.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자(단,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제외)
- 제8조(행위의 제한) ① 관람자는 제12조(행위의 제한) 수목원과 시설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6.08.01>
- 1. 수목,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
- 2. 동물 밀렵과 포획, 곤충채집, 식물채집. 토석채취 행위
- 3. 전동보드, 오토바이 등 동력장 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
- 4. 체육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을 하 는 일체의 행위(롤러스케이트·킥 보드 타는 행위, 배드민턴·야구· 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)
- 5. 자전거를 타는 행위
- 6. 종교의식과 모임활동 등을 하는 행위
- 7. 무단방뇨, 환경오염, 소음공해, 오물,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

<현행과 같음>

- 8. 포장마차.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
- 9. 음주. 취사. 소란을 피우는 행위
- 10.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·정차 하는 행위
- 11. 그 밖에 관람객의 관람이나 수목원의 관리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
- ② 연구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원을 명할 수 있다.
- 제9조(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허 | 제13조(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허 가와 제한) ① 수목원과 시설물 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· 단체 등은 사전에 연구소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의한다. 다만, 연구소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수목원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[별지 제1호서식]을 작성하여 연구소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.
- ④ 수목원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- 1.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
- 2. 특정 기관·단체의 영리목적 행사

가와 제한)

<혂행과 같음>

3.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

제10조(관리와 운영의 위탁) 연구 제14조(관리와 운영의 위탁) 소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| <현행과 같음> 와 운영, 전문수목원 조성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 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- 1. 수목원의 보안과 경비
- 2. 수목원 관람 안내
- 3. 수목원 조경 식재와 조경 관리
- 4. 수목원 조성을 위한 양묘장 관리
- 5. 수목원 환경미화
- 6. 각종 문화와 전시행사
- 7. 그 밖에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(강사료 지급) 체험학습프 제15조(강사료 지급) 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 한 외래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손해배상) 수목원의 시설 제16조(손해배상) 물이나 재산을 훼손하거나 절도 한 자에게 원상복구나 이에 상당 하는 금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 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제17조(시행규칙)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현행과 같음>

<현행과 같음>

│ <현행과 같음>

관계법령 발췌

□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- 제11조(입장료 등의 징수기준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·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4. 28.>
 - ② 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4. 3. 20., 2005. 6. 30., 2007. 7. 4., 2007. 12. 28., 2008. 10. 31., 2009. 8. 11., 2010. 3. 10., 2011. 5. 9., 2012. 1. 26., 2017. 4. 28.>
 - 1. 국빈과 그 수행자
 - 2.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
 - 3.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
 - 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 - 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 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- 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- 7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 - 8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 - 9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
 - 11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- 12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- 13.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

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

□ 비용추계서

- 입장료 징수를 위한 발권시스템 구축
 - 미동산수목원 발권시스템 구축 : 11,000,000원 정도 <산출근거>

내 용	수 량	단 가	견적금액		
미동산수목원 발권시스템 구축					
1. 발권장비	1식		3,130,000		
- 발권용 컴퓨터 : 삼성전자, i5-8500 헥사코어 win10 pro, 모니터(24")	1	1,200,000	1,200,000		
- 발권용 프린터 : TECB452, 열전사 감열프린터, 자동커팅기 포함	1	1,650,000	1,650,000		
- 카드/현금영수증용 프린터 : 열전사 감열프린터(sam4s)	1	200,000	200,000		
- IC카드리더기	1	80.000	80.000		
2. 발권프로그램 부분			4,000,000		
- 발매용 프로그램					
- 현금 및 카드발권					
- 정산 및 관리자전송기능					
- 관리용 프로그램					
- 각종 정산서 및 통계기능					
3. 발매용 입장권 및 카드용지					
- 입장권 용지	100,000	25	2,500,000		
- 전면칼라 후면2도 감열용지					
- 카드영수증용지	1박스	60,000	60,000		
- 감열용지 후면 약관					
Amount	9,690,000				
VAT	969,000				
Total Amount	unt 10,659,000				

□ 재원 조달방안

- 충청북도 추경예산 편성
 - 소요예산 : 11,000,000원 정도(도비 100%)
 - ※ 조례, 규칙 개정 도 의회 심의시 협의 병행